

[사 건 명] 행심 2015-5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교육지원청에서 2015. 01. 12. ‘청구인이 ■■■군청 ○○○○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왜 ■■■군수 ◇◇◇에 대한 행정소송 서류에 첨부되었는지 피청구인이 아는지 여부, ●●●, ♣♣♣이 ◇◇초등학교의 직장 내 불륜사건으로 친자확인 유전자감식 실태조사내역을 요청한 내역서 및 그 내역을 발송한 내역서’ (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동 기관에서는 2015. 1. 16. 청구인에게 ◇◇초등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임을 통보하였다.

나. 2015. 02. 05.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통지에 불복하여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접수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02. 09. 우리위원회로 청구 건을 이송하였으며, 2015. 02. 11. 우리위원회에서 접수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이 ■■■군청 ○○○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왜 ■■■군수 ◇◇◇에 대한 행정소송 서류에 첨부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초등학교에서도 불륜사건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 하고자 하며, ■■■군청 공무원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5. 01. 12. ■■■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장을 당사자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5. 01. 26. 청구인에게 ◇◇초등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임을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 1) 「행정심판법」 제2조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I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